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234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II . 검토의견	2
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재도입 ·	2

I. 개 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계원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4. 10.
- (3) 회 부 일 : 2026. 4.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Ⅱ. 검토의견

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재도입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제107조의3제1항) ☐ 외국인관광객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 적용기한(종료) - 2025년 12월 31일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재도입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재연장 - 2027년 12월 31일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 ☐ 적용례 - 법 시행 이후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조계원의원안 2026. 4. 10. 발의(의안번호 18234)

☐ 개정안은 외국인관광객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특례를 재도입하되, 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그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음.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제도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4월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규정 신설 당시에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적용기한을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이후 적용기한이 6차례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여 동 특례제도가 종료되었음.

○ 2025년 세법 개정 논의 당시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에 대해 심사하였으나, 추가적인 일몰 연장 없이 종료되었음.

□ 과거 운영된 동 특례제도의 내용을 보면, 동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인관광객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¹⁾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으로,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국제연합군·미국군의 장병 등은 제외되고 있음.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쌍꺼플 수술, 코성형수술 등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으로 한정되며²⁾, 외국인

1)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②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제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

관광객이 직접 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를 통하여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첫째, 동 특례제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유치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환자가 국내에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둘째, 우리나라 의료용역 대상이 되는 외국인 환자 수는 2016년 42.5만명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기준 208.7만명으로 2024년 124.5만명 대비 67.7% 증가하였고, 특히 2025년 전체 외국인 환자 중 피부과 환자는 62.9%, 성형외과 환자 비중은 11.2% 수준임. 즉,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분야 환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점에서 의료 관

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2016년 이후 피부과·성형외과 외국인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425,380	397,882	464,452	590,866	134,662	181,481	293,350	678,799	1,244,769	2,087,400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부과	47,340	43,327	63,671	85,194	15,409	11,979	36,060	239,060	705,044	1,312,700
(비중)	11.1	10.9	13.7	14.4	11.4	6.6	12.3	35.2	56.6	62.9
성형외과	47,881	48,849	66,969	90,494	16,585	16,678	46,314	114,074	141,845	233,100
(비중)	11.3	12.3	14.4	15.3	12.3	9.2	15.8	16.8	11.4	11.2

주: 진료과별 실환자 기준(1명의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한 경우, 방문한 진료과별로 1명으로 표기)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조세지출 대비 의료 관광 유치 효과성 여부임. 동 특례제도가 재도입되기 위해서는 과거 조세지출 대비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의료용역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확인되는 것이 필요함.

동 환급 특례에 따른 2024년도 감면세액은 778억원이고, 2025년에는 2,177억원, 2026년에는 2,246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조세지출의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임.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2026 (전망)
미용성형 의료용역	6	25	296	778	2,177	2,246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한편, 2025년 실시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따라 피부과·성형외과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수의 증가는 관찰되나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 측면에서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고, 제도 도입·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세수 증가분은 해당 조세지출 규모의 43~85% 수준으로 나타났음.

또한, 2021~202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외국인 환자 한국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 선택 시 고려요소로 ‘의료진의 의료기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 선택 시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비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둘째, 외국인관광객에게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과의 과세형평성에 어긋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현행 「부가가치세법」³⁾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

3) 「부가가치세법」

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 따라 미용성형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1년간 적용할 경우 2027년 1,759억원, 2028년 586억원 등 총 2,345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시 세수효과]

(단위: 억 원)

구 분	2027	2028	누적	연평균
국 세 (74.7%)	△1,314	△438	△1,752	△876
지방소비세 (25.3%)	△445	△148	△593	△297
전 체	△1,759	△586	△2,345	△1,173

주: 환급대상인 의료용역 공급 후 3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급 기간을 감안해 당해연도 용역 공급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년도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환산하여 반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문 의 처
02)6788-5147